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일본

※본 자료는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현행 법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1. 결제수단	2
1-1. 대금 지급 방법	2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2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2
2. 표시광고	2
2-1. 표시광고(정보제공)	2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3
3. 청약철회	3
3-1. 청약철회	3
3-2. 환불	3
4. 환불	4
4-1. 표준약관 환불	4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4
5. 미성년자 결제	4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4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관련)	4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4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4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4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5
6-1. 전자문서 활용	5
6-2. 거래기록 보존	5
6-3. 조작 실수 방지	5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5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5
6-6. 청약 확인	5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5
6-8. 결제한도	5
6-9. 추천 광고	6

1. 등급심의	8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8
1-2. 등급분류 주체	8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8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8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8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9
2. 등급분류 사후관리	9
2-1. 등급분류의 거부	9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9
2-3. 등급분류 효력	10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10
2-5. 등급의 조정	10
2-6. 등급분류의 취소	10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10
3. 확률형 아이템	10
3-1. 판매 가능 여부	10
3-2. 적용 대상	11
3-3. 준수 사항	11
3-4. 미 준수 시 페널티	11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11
4. 광고 관련	11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11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3
1-1. 본인인증/ID 생성	13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13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13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13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13
1-6. 강제적 섯다운제	13
1-7. 선택적 섯다운제	13
1-8. 미성년자 정의	14
1-9. 미성년자보호법	14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14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6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16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16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16
2. 개인정보 처리	16
2-1. 개인정보 파기	16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17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17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17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17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17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17
3. 개인정보보호	18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18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18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18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18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20
1-1. 게임법 유무	20
1-2. 게임 관련 규정	20
2. 경품 이벤트	20
2-1. 관련 법령	20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20
3-1. 국내 대리인 지정	20
3-2. 법인 설립 의무	20
3-3. 서버 설치 의무	20
4. 외국인 투자 제한	21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21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1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21
5. 서비스 허가증	21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21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지급 방법

- 관련 법률 : N/A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관련 법률 : 자금결제법
- 부연 설명 : 게임 내 캐시는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자금결제법에 의거한 신고 절차 준수 필요
 - 1) 과금 가능한 게임을 일본 내에 출시할 경우 게임 사업자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반드시 금융청에 신고해야 함
 - 2) 게임 내 캐시는 원칙적으로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신고 절차가 필요
 - 3) 단, 사용기한이 일정 기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이용자에게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함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 관련 법률 : 자금결제법
- 부연 설명 :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참고
※ 법에서 정한 기한은 없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관련 법률 : 특정상거래법
- 부연 설명 : 게임 내에서 캐시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특정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므로, 제11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한 고지가 필요함
 - 1) 상품 혹은 권리 판매 가격, 서비스의 대가
 - 2) 상품 구매 시, 구매방법 및 지급 시기
 - 3) 상품 구매계약의 해제 및 철회에 관한 사항(8일 이내)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관련 법률 : 경품표시법
- 부연 설명 : 경품표시법 제5조에 따라, 상품 정보 고지 시, 실제 상품보다 현저히 유리 또는 우량하다고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되어있음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소비자거래법
- 부연 설명 : 소비자거래법상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규정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무효로 간주됨

B2C 계약의 경우, 소비자계약법상 쿨링 오프 제도(청약 철회 보증)를 청약철회에 적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 ‘소비자가 광고 및 이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충동성이 없는 거래’로 인정, 쿨링 오프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3-2. 환불

- 관련 법률 : 자금결제법
- 부연 설명 : 자금결제법 제20조에 따라,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했을 때에는 환불의무가 생기고, 환불 공고를 한 날의 미사용 잔고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적용됨
 - 1)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 폐지를 결정했을 경우, 환불 절차 보고서를 재무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 2)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환불 공고를 아래 내용을 정하여 게재 및 진행해야 함
 - 환불내용
 - 환불할 선불식 지불수단의 발행자 성명/상호 또는 명칭
 - 환불과 관련된 선불식 지불수단의 종류
 - 환불과 관련된 선불식 지불수단의 보유자는 6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함
 - 공고된 일정 기간 내 환불 신청을 하지 않는 보유자는 환불

4. 환불

4-1. 표준약관 환불

- 관련 법률 : N/A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 관련 법률 : N/A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민법상 만 20세부터 성인에 해당함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 관련)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즉, 계약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한 법규는 없음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 관련 법률 : N/A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 관련 법률 : N/A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 관련 법률 : N/A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관련 법률 : N/A

6-2. 거래기록 보존

- 관련 법률 : N/A

6-3. 조작 실수 방지

- 관련 법률 : N/A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 관련 법률 : N/A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 관련 법률 : 특정상거래법
- 부연 설명 :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특정상거래법 제11조에 따라, ‘특정상거래법에 기반한 표기’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6-6. 청약 확인

- 관련 법률 : N/A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 관련 법률 : N/A

6-8. 결제한도

- 관련 법률 : N/A

6-9. 추천 광고

- 관련 법률 : N/A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관련 법령은 없으나 자율규제(CERO)를 운영하고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자율 게임심의기구 CERO를 통해 일본 내 별도 등급분류 취득이 가능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CER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에는 콘솔(닌텐도/엑스박스) 및 PC/모바일 등 대부분의 게임물이 포함됨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CERO Code of Ethics 규정 제4조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됨
 - 1) 전체이용가(A)
 - 2) 12세 이상 이용가(B)
 - 3) 15세 이상 이용가(C)
 - 4) 17세 이상 이용가(D)
 - 5) 18세 이상 이용가 (Z)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CERO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됨
 - 1) 심사의뢰

- 2) 심사접수 : 게임물 스토리를 적은 문서, 플레이 영상, 위탁계약서, 심사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함
- 3) 결과통지 : 심사결과 통지서, 심사결과 동의서 발송
- 4) 업체에서 동의서에 동의 또는 비동의를 선택하여 반송
- 5) 동의 시 심사종료, 비동의 시 재심사 등 별도 절차에 들어감
- 6) 심사결과에 해당하는 등급표시를 제품에 표시
- 7) 완성된 제품 1개 납품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CERO 내부 심의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판정 결과를 심사결과 통지서 및 심사결과 동의서에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발송함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심사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등급분류 비용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되며, CERO Code of Ethics 부록 제3장을 통해 게임물의 콘텐츠의 표현이 과도한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는 사례를 나열하고 있음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CERO 내부 심의규정에 따라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 등급별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앞면 명시 의무사항
 - 연령별 등급마크, 해당 시 기타 마크(교육·데이터베이스, 체험용, 심사 예정)
 - 2) 뒷면 명시 의무사항

- CERO 콘텐츠 아이콘(연애, 선정성, 폭력, 공포, 음주·흡연, 도박, 범죄, 마약·약물, 언어·기타)

2-3. 등급분류 효력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실물판매 방식으로 게임물이 유통되는 경우 및 플레이스테이션의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포함하는 게임물에 대해 CERO 등급 취득이 필수적임
 - 1) 플레이스테이션 : IARC 등급 활용 불가, CERO 등급 취득 필요
 - 2) 엑스박스 :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일 경우 IARC 등급 활용 가능
 - 3) 닌텐도 :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일 경우 IARC 등급 활용 가능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관련 법률 : N/A

2-5. 등급의 조정

- 관련 법률 : N/A

2-6. 등급분류의 취소

- 관련 법률 : N/A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 관련 법률 : N/A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 N/A

3-2. 적용 대상

- 관련 법률 : N/A

3-3. 준수 사항

- 관련 법률 : N/A

3-4. 미 준수 시 페널티

- 관련 법률 : 경품표시법
- 부연 설명 : 유료로 구매한 확률형아이템의 특정 아이템 혹은 캐릭터 등을 수집해야 최종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온라인 게임의 ‘کم프 가차’)의 적용은 금지됨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 관련 법률 : JOGA 가이드라인
- 부연 설명 :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는 JOG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4. 광고 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 관련 법률 : N/A

Ⅲ.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관련 법률 : N/A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관련 법률 : N/A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 관련 법률 : N/A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관련 법률 : N/A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단,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본인을 성년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

1-6. 강제적 섷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7. 섷택적 섷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8. 미성년자 정의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참고

1-9. 미성년자보호법

- 관련 법률 : N/A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 관련 법률 : N/A

IV.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등)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수집 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 목적을 공개해야 함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는 필요하나, 아래 사항을 사전 통지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
 - 1) 제3자 제공을 이용 목적으로 함을 통지
 - 2)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의 항목 통지
 - 3) 제3자 제공의 삭제 방법을 통지
 - 4) 본인 요청이 있을 때 제3자 제공 중지가 가능함을 통지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함

개인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실시해야 함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아래 사항은 필히 공개되어야 함
 - 1) 개인정보취급 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 2) 보유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이용정지, 삭제
 - 4) 제3자 제공 중단 요청 절차
 - 5) 불만 제출처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관련 법률 : N/A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동의 받은 경우, 이전이 가능함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관련 법률 : 특정 전자 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특정 전자 메일의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메일로 자사의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광고의 수신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광고성 메일에는 발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추천 광고를 노출하는 데에 쿠키 등을 이용할 경우, 당초 정해둔 이용 목적 범위의 밖에 있다면 별도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주체는 보관 대상인 개인정보의 내용 수정 및 추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반 해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관련 법률 : N/A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관련 법률 : 민법
- 부연 설명 : 민법 제709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됨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관련 법률 : N/A

V.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관련 법률 : N/A

1-2. 게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 저작권 및 상표권법
- 부연 설명 : 게임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한 법률로, 타 게임과 유사한 경우 또는 타사의 게임 상표를 침해한 경우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관련 법률 : 경품표시법
- 부연 설명 : 경품에 관한 내용은 경품표시법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경품류의 최고액(상품 가격의 20배, 상한선 10만 엔), 총액, 종류, 제공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경품 자체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3-2. 법인 설립 의무

- 관련 법률 : N/A

3-3. 서버 설치 의무

- 관련 법률 : N/A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 관련 법률 : N/A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관련 법률 : N/A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관련 법률 : N/A

5. 서비스 허가증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관련 법률 : N/A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일본

KGAMES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7, 8F

Tel. 02.6203.1900 Fax. 02.3477.2708 E-mail. k-games@gamek.or.kr